

제926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- 안 건 명 : 성동구 노후 사각형거 정밀점검 용역(추가요청)
- 심 사 일 : 2013. 10. 01
- 사업개요
 - 용역비 : 31,691천원
 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90일
 - 사업규모 : (당초) 정밀점검(5개소) ■1.5×1.5~2■4.0×1.8m, L=2,116m
 → (추가요청) 정밀점검(10개소) ■1.5×1.5~2■4.0×1.8m, L=4,249m
- 심사결과 : 적 정

| 심사항목 | 심사내용 |
|---|---|
| 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암거에 대한 정밀점검을 처음 시행하여 하수암거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역시행 필요. 알림 :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 |
| 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| [용역비조정 : 31,691천원 (용역비 조정 없음) ※ 제919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[기술심사과-15598(2013,9.26)]와 관련하여 점검대상 시설을 추가(변경)하여 요청한 심사안건임. |
| 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용역의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 ○ 정밀점검 완료 후 실시설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자체설계 또는 용역 시행방안을 검토할 것. |
| 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차면·중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| - |